

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

## 심 사 보 고 서

2017. 5. 18.

사회건설위원회

### 1. 심 사 경 과

가. 발의일자 : 2017년 5월 11일

나. 발 의 자 : 김재진, 김용범 의원 외 5명

다. 회부일자 : 2017년 5월 11일

라. 상정일자 : 제20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
제1차 사회건설위원회(2017. 5. 16.) 상정 의결

### 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김재진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 및 교육, 자립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(안 제3조)
-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의 수립(안 제4조)
-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(안 제5조)
- 학교 밖 청소년지원사업 등(안 제6조 ~ 안 제8조)
-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등(안 제9조 ~ 안 제10조)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 : 권대광)

- 본 조례안은 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, 자립 등의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의 편견 또는 이탈의 가능성이 높은 학교 밖 청소년들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11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.
- 주요 제정내용
  -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매년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을 수립·시행토록 하였으며, 지원시책을 심의·자문하기 위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를 구성하며, 위원회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“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육성위원회”가 그 기능을 대신하도록 함.
  - 지원내용으로는 대안교육기관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, 대안교육기관의 학습자가 우리구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「초·중등교육법」에 따른 학생과 동등한 권리와 편의를 보장하며,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 교육 및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·경찰서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,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등의 사항을 규정함.
- 1) 서울특별시교육청 “2016년도 서울교육통계연보”에 따르면 우리구 2015학년도 학업중단 학생 수는 총 322명(1.03%)이며, 질병이나 유학 또는 해외출국 등으로 학업을 중단한 경우를 제외한 실질적인 학업중단 학생 수는 ‘학교 부적응 30명’, ‘제적 2명’으로 조사되었으며, 최근에는 자발적으로 학업중단을 선택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.
- 학교 밖 청소년은 무계획적인 학업중단 및 정보의 부재로 학교 밖 적응에 애로점이 많으므로 이들에게 학업복귀, 진로·진학 및 직업훈련·취업 연계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며, 무엇보다도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는 학교를 부적응하는

1) 서울특별시교육청 「2016 서울교육통계연보」  
- 학업중단자 변동사항조사 기준기간 : 2015.3.1. ~ 2016.2.29.

잠재적 학업중단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원인을 파악하여 전문적인 상담과 맞춤형 대안교육을 실시하여 사후대책보다는 예방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사료 됨.

- 학업중단은 청소년들 개개인의 장래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회적 문제일 뿐만 아니라, 2)학업중단 학생 1인당 약 1억원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본 조례안을 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체계 마련의 근거가 되고, 건전한 사회생활이나 자립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됨.

#### 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---

2) 교육부 ■ 여성가족부 「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방안」 (2013. 11.)

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

(김재진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9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17년 4월 일

발 의 자 : 김재진, 김용범 의원(2명)

찬 성 자 : 권영식, 허홍석, 정영출,  
박정자, 유승용 의원(5명)

## 1. 제안이유

일반 청소년에 비하여 범죄의 가담이나 비행·일탈의 가능성이 높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받고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가.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(안 제3조)

나.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의 수립(안 제4조)

다.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(안 제5조)

라. 학교 밖 청소년지원사업(안 제6조 ~ 안 제8조)

마.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등(안 제9조 ~ 안 제10조)

### 3. 제정안 : “별첨”

### 4. 참고사항

#### 가. 관련 근거

- 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, 제5조(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), 제6조(실태조사), 제7조(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), 제12조(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)
-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4조(학교의 설립 등)

나. 예산조치 : 별도 조치 필요 없음.

다. 입법예고 (2017. 4. 27. ~ 5. 4.) : 의견 없음.

#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에게 교육 및 자립 지원 등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- 1.“학교 밖 청소년”이란 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.
- 2.“대안교육”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욕구에 부합하도록 제공되는 인성 및 적성위주의 교육과 현장체험위주의 교육 그리고 진로교육 등을 말한다.
- 3.“대안교육기관”이란 제2호의 “대안교육”을 행하는 기관으로써, 「초·중등 교육법」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한 기관을 말한다.

제3조(구청장의 책무)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 밖의 공간에서도 자존감을 회복하고, 미래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, 이들의 욕구에 부합하는 지원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.

제4조(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의 수립)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매년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(이하 “지원계획”이라 한다)을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**제5조(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의 구성)**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시책을 심의·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자문 한다.

1. 지원계획의 수립·변경에 관한 사항
2. 비영리 법인·민간단체 등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
3. 학교 밖 청소년 유관기관 네트워크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
4. 학교 밖 청소년 인권침해 및 차별사례에 대한 관계기관 진정 및 개선요구에 관한 사항
5. 제9조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
6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

③ 위원회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」에 따른 “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육성위원회”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.

**제6조(대안교육기관 지원)** 구청장은 대안교육기관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**제7조(공공시설 이용권)** 구청장은 대안교육기관의 학습자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「초·중등교육법」에 따른 학생과 동등한 권리와 편의를 보장하여야 한다.

제8조(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)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 지원을 위하여 교육지원청,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청소년 지원기관 및 관련 사회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.

제9조(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등)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(이하 “지원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하거나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.

②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학교 밖 청소년 직업체험 및 상담교육, 자립취업지원
2.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협력
3.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
4.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
5.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
6. 학교 밖 청소년 발생 예방 사업
7.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
8.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
제10조(지원센터의 위탁)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·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

제11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